

‘벽을 넘어, 인권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좋은 학교, 좋은 교육’ 토론회

학교 안의 학생인권

일시 2008년 12월 29일(월) 오후2시

장소 용산 철도 웨딩홀

주최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벽을 넘어, 인권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드는
‘좋은 학교, 좋은 교육’ 토론회

학교 안의 학생인권

일시 2008년 12월 29일(월) 오후2시

장소 용산 철도 웨딩홀

주최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순서

사회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발제

■ 박부희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 ----- 4

학교 안의 학생인권
-2008년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전누리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 17

학생인권의 현실과 그 개선방안

토론

■ 토론1.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27

■ 토론2. 천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장) 32

■ 토론3. 박철우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35

■ 토론4. 류형경 (청소년) 38

참고자료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41

학교 안의 학생인권

-2008년 학부모상담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박 부 의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 상담실)

교육기본법 제12조 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권한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항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도 사람이다. 이 말은 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내면적 양심을 가진 주체임을 의미한다.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듯이 학생, 즉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주체이므로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학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지켜야 하는 규범이 있다. 하지만 그 규범이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교육적 목적과 질서유지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또한 규범의 제정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해야 규범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줄일 수 있어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즐겁게 교육에 힘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2008년 참교육학부모회 상담실의 상담사례 중 특징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모았다. 어떤 것은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고, 어떤 것은 법은 제대로 마련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 잘못 적용하여 생기는 것도 있었다. 유형별로 사례를 신고 법령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UN아동권리협약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도 살핀 후, 학부모상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대안을 제시했다.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 체벌과 언어폭력

사례1) 중1 학생의 엄마다. 학기 초에 열린 학부모총회에서 성적 미달 학생에게는

체벌을 가해서라도 성적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한 후, 수시로 쪽지 시험을 보고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은 손바닥을 때리는데 우리 아이가 주요 타깃이 되었다.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은 그럭저럭하는데 국어와 사회를 못하고 체벌을 너무 두려워하여(초등 3학년 때 담임에게 무자비하게 맞은 경험 있음. 적극적으로 항의하여 사과를 받았지만 아이의 상처가 너무 큼) 담임만 보면 공포를 느낄 정도다. 중간고사에서 반평균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각오하라는 말에 사회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켰으나 시험 시간에 아이가 너무 떨어 답안지 작성을 제대로 못하고 주눅이 들어 귀가했다. 담임에게 여러 번 찾아가 아이 상태에 대해 상담도 하고 시험을 앞두고 편지도 보냈는데 (체벌 대신 오답 정리와 같은 방법을 제시함) 매우 기분 나빠하셨다. 담임은 인성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 반이 꼭 1등 해야 된다는 성과제일주의로 학교에서도 사이코라는 소문이 났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례2) 우리 아이는 행동이 좀 느리지만 1~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크면 나아진다고 했지 그것 때문에 맞고 오지는 않았다. 집에서도 체벌을 하지 않는다. 지금 담임은 아이들이 떠들거나 딴 짓을 하거나 또는 준비물을 안 가져오거나 숙제를 안 해올 때마다 아이들을 체벌한다. 대나무 가쁜 것을 고무줄로 묶어서 발바닥, 손바닥, 몸 어디든 가리지 않고 때려서 아이의 팔과 어깨 등에 멍이 들어오곤 했다. 어떤 아이는 한번에 50~60대를 맞고 하루에 수백 대 체벌을 한다고 한다. 맞는 것에 겁을 먹던 아이인데 이제는 '때리려면 때려라, 더 아프게 때려봐라'하는 식의 마음이 든다고 하고, 순했던 아이들도 다투는 일이 찾아진 것 같다. 부모들에게도 "아이가 늘 딴 짓한다, 산만하다" 등의 말을 자주 하고 아이들에 대해 혼내거나 매로 다스리려고 하지 칭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학기 초에는 이 교사에 반대해서 아이를 전학시킨 부모도 있다.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다른 부모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으나 참고 있는 것 같다.

총회, 공개수업, 운동회만 가 봤고 별도로 상담은 안 해봐서 담임교사를 만나러 가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바란다.

체벌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 제18조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에 있다. 법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령 31조 7항은 원칙적으로는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사항을 두어 체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체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 위원회는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제 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 2002.09.0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 2002.09.09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체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 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정계 형태를 조성하라.
- 2003.1월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교사의 의한 언어폭력과 체벌은 가장 빈번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체벌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데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앞장서야 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체벌을 일상처럼 경험하며 자란 아이들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책임지는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비폭력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교직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초·중등교육법」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 2002년 11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내용-

따라서 체벌의 빌미가 되고 있는 위의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 등의 물리적 폭력과 욕설과 비하적 발언 등의 언어폭력 금지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²⁾

또한, 법의 규정과 더불어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교사 연수와 일급정교사 연수 등,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연수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사에 의해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두발, 복장 등의 제한과 지나친 단속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사례1) 사립 00고 2학년 남학생인데 학기 초 머리가 길다고 등교시간에 뺨을 맞고 벌을 서고 왔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한창 옷이나 머리에 신경 쓸 때 아닌가? 그런 것 가지고 벌을 선다는 게 기가 막히다. 부부교사인 조카 부모도 속상해한다. 조카 부모는 각각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데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교운영 위원회에서도 두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 한다. 부모가 직접 나서기는 힘들어서 대신 내가 상담한다. 다른 아이도 한번 걸렸는데 반발을 했더니 바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단다. 교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다. 이 학교에는 학생회도 없나? 아이들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는 것 같다. 학교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라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사례2) ○○중학교에서 사전에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없이 더블코트를 입을 것을 방침으로 세웠다. 이 지역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인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블코트를 지정하지 말고 언니에게 물려받은 파거나 다른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다. 학교는 “그것도 못 사 입하나?” “그럼 혼자 입히지 마라”라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아동은 사생활과,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2)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 3항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머리모양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제한의 필요성도 인정하며 그 한계에 대해서는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2항³⁾)는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학생의 의견수렴이 형식적 동의 절차이어서는 안 되고, 교사나 학부모의 의견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참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두발이나 복장을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에 합치(규정내용의 정당성)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용모규정과 관련하여 제한여부와 정도에 관해서는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결정권(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그 과정에 소외된 채 제시된 규정만을 지키는 의무만을 지닌다면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규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일방적인 규정의 강요는 끊임없이 학생과 교사 사이에 마찰과 갈등을 싹트게 만

3)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든다. 교사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되어 학생과 교사 간의 교육적 관계가 훼손된다. 즉, 생활지도란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학생의 자아실현과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 내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이어야 함에도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의 검사와 그에 대한 처벌이 ‘생활지도’로 불리고 있다. 일상적인 제한과 통제로 학생의 존엄성과 건강한 학교문화를 훼손하는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

징계의 내용과 절차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별점제와 강제 전학

사례1) 이 학교는 자사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칙이 매우 엄하다. 올해부터는 더욱 엄격해졌다. 휴대폰을 소지하면 3점, 무단결석 5점, 무단결과 3점, 머리 길이 1점 등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1년에 15점이 이상이면 교내봉사, 25점 이상은 사회봉사. 40점 이상은 특별봉사, 50점 이상은 전학권고, 60점 이상은 퇴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 활동을 하더라도 벌점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삭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벌점을 준 교사가 선행을 한 학생에게 삭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니 교사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삭감이 정해진다. 마음에 드는 학생에게는 유리창을 닦으라고 시킨 후 삭감을 시켜주는 반면, 교사에게 입보인 학생은 삭감을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같다. 1학년 중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20점 이상이라는 말이 있다. 학생들이 이 벌점제 때문에 마음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한다. 학생 징계가 선도와 교육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방침을 어기는 학생을 제거하려는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

사례2) 공립 고등학교 1학년 아이 부모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세 번 적발되었다. 처음에 걸렸을 때는 교내봉사, 두 번째 걸렸을 때는 금연교육을 받는 특수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았고 이번에 세 번째 걸렸더니 퇴학시키기 전에 전학가라고 한다. 이미 세 네 명이 이렇게 조치된 전례가 있어서 봐 줄 수 없다고 한다. 아니면 퇴학조치 한다는 데 담배를 피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남편과 나는 설마 퇴학을 시키겠냐며 버티고 있다. 다른 교칙 위반은 없다. 너무 억울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의3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퇴학처분
 -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 ⑤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계·훈육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위의 법령에서 징계와 관련하여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 법 18조 2항에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재심청구의 기회부여⁴⁾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재심청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의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라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기관의 징계과정에 의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과 아동의 참여를 증진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라"라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징계와 관련하여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체벌 없는 생활지도라는 명분 아래 만들 어진 '벌점제'가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

4)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제18조 2항에는 의견진술 및 재심청구의 기회부여에 대해서 명시함.

31조 2항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점제는 선도위주의 교육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재학기간 내내 촘촘한 누진벌점제의 감시망 속에서 불안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한다. 또한 다음에 언급할 강제전학의 명분으로 이용되어 학생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학'이 징계 종류 중의 하나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전학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중의 하나로써 피해자에게는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을 하게 할 수 있다⁵⁾. 학생의 징계의 종류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전학은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지금 각 학교에서는 벌점제의 누적으로 전학을 보내기도 하고 흡연이나 두발 등으로 인한 학칙 위반, 심지어는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전학을 강요하고 있다.⁶⁾ 선도 규정이나 생활 평가 규정에 전학을 명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행하는가 하면, 어떤 학교에서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을 어기고 전학을 징계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다. 두 가지 다 문제지만, 학교규정에 없는데 전학을 보내는 경우, 의견진술과 재심의 기회부여 등의 적법한 절차가 생략되기 일쑤이고, 학교 측이 임의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마련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전학조치를 남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⁷⁾는 것을 편의대로 적용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전학은 법령에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지금처럼 강제로 전학을 보내면서 겉으로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주지 이전 등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전학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전학이 필요한 학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행하여야 하고, 더 이상 퇴학처분에 대신한 징계사항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5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5항의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05.08)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의 아들이 00시 00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명찰 미 부착, 흡연, 무단외출, 두발위반, 야간 자율학습 미 참여 등으로 벌점을 많이 받아서 피진정인으로부터 2007. 5. 말경 퇴학예정 및 권리전학의 징계조치와 전학 종용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이와 같은 사유로 20여명의 학생들이 같은 조치를 당함. 또한, 같은 관내의 교장들이 피해자들의 전학(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것은 학생지도 의무를 다른 지역 학교에 전가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임."

7)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3항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89조 5항 '73조 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에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책의 미비로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사례1) 지난 4월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다가 아이 하나가 넘어져 이 세 개가 부러졌다. 상대방 아이 학부모가 일차 치료비로 230만원을 요구해서 줬다. 학교는 안전공제회에 신청했고 조사관이 나왔는데 병원에 가서 상대 학부모가 상해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니 안전공제보상이 안 된다고 하며 돌아갔다고 한다. 상대 학부모도 안전공제 신청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젠 향후 치료비로 다시 1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례2)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었다. 학교에서 안전공제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되었다고 한다. 피해 아이가 두 번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확실하다고 하며 반려가 되었다고 한다. 전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인데 왜 안전공제가 안 되는 것인지? 학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고 하고 피해자 부모는 9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한다. 공제신청 전에 경기도 안전공제회에 전화했더니 안전공제보상이 된다고 했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상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 급여를 신청하는 것 자체를 학교 측이 거부하는 경우이다. 피해학생의 부주의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와 사고의 쌍방이 있는 경우에 일방을 가해자로 규정하여 보상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겠지만 학교장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시행규칙 제3조 1항의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고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직접 공제회에 공제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청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피해학생의 부주의나 장난으로 인한 사고에는 본인 부주의의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적정하지 않은 보상을 하거나 아예 보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교는 본래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특수한 곳이므로 우발적인 사고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 것인데 보상신청조차 해 주지 않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

학생들이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소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분명한 고의성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명백한 가해자로 단정 짓고 학부모 간에 서로 합의하여 치료비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회가 조사를 통해 고의성과 중대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가해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제회에 즉시 통지하여 고의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가해자’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보상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학교 측과 학부모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은 공제급여의 제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3조 (공제급여의 제한)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 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②공제회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생의 장난이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 급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와 각 학교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외에는 전부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피해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제회의 보상이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41조에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만을 보상한다. 따라서 사고피해자나 보호자가 부담한 액수와 차이가 있다. 학교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 중 하나는 치아가 관한 것인데,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는 치아손상시에 임플란트시술을 권유하는데 반해, 공제회에서는 도재전장관(사기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으로 치아보철을 하게 되어 있고⁸⁾ 임플란트시술의 보장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모가 부담한 실치료비와 보상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항

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고는 상해로 취급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액은 본인일부부담금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치료비용을 피해학부모가 지급하거나 가해학생 학부모라고 불리는 상대학부모에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3조에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제시된 것처럼 학생의 안전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학생이 안전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마련한 것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아, 사고의 피해를 학부모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 예방에 관해 명시한⁹⁾ 법률에 따라 예방교육과 시설관리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하고 보상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사례1) 고3재학 중인 아이가 오랫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우리아이는 중학교 때도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담임교사의 특별한 배려와 지도로 별 탈 없이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고도 하고, 또래아이들을 만나면 외면하기도 해서 1학년 말부터 일 년 4개월 정도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아이가 직접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았다. 우울증세가 심해져 약을 구입해서(수면제 종류)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적도 있다. 고3 담임이 아이가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담임은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되었고 가해학생 8명을 조사하여 그 중 주동자를 2명으로 압축하고 1명은 사회봉사 징계를 내리고 한 명에 대해서는 전학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우리아이는 좁은 지역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되면 학교 밖에서 더 괴롭힐 것 같아 전학보다는 학급교체를 원했다. 그런데 1학기 중간고사이니 나중에, 방학 보충수업이니 나중에 하면서 미루더니 2학기 개학을 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감, 학생부장 등에게 수차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사안을 덮으려고 하여 아버지와 찾아가 관리 소홀의 이유를 들어 법적 책

임을 물겠다고 하니, 그제야 가해학생의 학급을 옮겼다.

사례2)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엄마다. 입학 이틀 후부터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반에 같은 중학교 출신 친구가 있어 반가운 마음에 이를 동안 같이 지내보았는데 딸아이와 맞지 않아서 가까이 하지 않았더니 그 뒤로 따돌림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그 친구가 반장이 되었고 반 아이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 반 아이들이 그 친구 말을 잘 따르고 있다. 반 친구들이 우리 아이와 말을 하면 그 반장 아이가 뭐라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우리아이를 덩달아 따돌리고 있다. 참다못해 그 반장 아이와 전화통화를 해보았으나 본인은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잡아뗀다. 담임교사는 초임교사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부장선생님은 별 문제 아니라는 듯 방관하고 있다. 담임교사도 그 친구가 품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여 다른 반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냥 묵살 당하고 말았다. 심지어 우리 아이더러 전학가라고까지 한다. 이런 일은 아이가 처음 겪는 일이라 나도, 아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힘들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여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6,7,8,9조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기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소홀하게 처리된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폭력으로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미흡할 뿐더러 학교행정의 편의 때문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이다. 위의 사례1))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에 있을 경우 심한 위협을 느껴 학급교체를 요구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묵살되곤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형식적일 때가 대부분이다. 가해자이기는 하나 가해학생도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법률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함께 교육적인 선도나 생활지도를 인내심을 갖고 병행해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활동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위주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미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의 기능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후 조치보다 폭력예방교육을 충실히 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소집되는 자치위원회 활동만으로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 전문상담기구를 만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상담치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발제

학생인권의 현실과 그 개선방안

전 누 리 (교육공동체 나다)

/청소년인권활동가 네트워크)

1. 들어가며

중세와 근대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 시민혁명은 인권의 개념을 창조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가 인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이 주장되었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범주는 한정적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누져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인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다. 오로지 부르주아(자본가), 백인, 남성들만 인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위기 속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 행복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소중한 한 인간이라고,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노동자였다. 폭주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발전 속에 생존이 위협받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체결한 투쟁 속에 오늘날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체제가 등장했고, 또 파업권 등의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 다음은 여성이었다. 가부장질서체계에서 종속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은 남성중심의 사회를 비판하고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 여성주의적 가치의 사회 등을 요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동등한 선거권과 사회참여 등을 인정받았다. 흑인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백인중심의 사회를 거부하고 피부색이 어떠하든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는 사회를 요구했고, 백인과 동등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동성애자, 장애인 등 많은 다양한 삶의 방식,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요구했다. 학생·청소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흔히 68혁명이라고 불리는 1968년에 벌어졌던 사람들의 저항 속에서 특히, 서구 사회에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학생·청소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일찍이 90년대부터 학생의 목소리,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외쳐졌고 2000년대를 지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의 학생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요구는 어떠한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먼저 한국社会의 학생인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학생인권의 현실

먼저, 학생인권의 현실을 살펴보기 전에 학교에 대해 짚고 넘어가보자. 사실, 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이 근대시기에 등장한 것처럼 오늘날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과 학교라는 제도는 근대의 산물이었다. 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동력의 생산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이라는 시기의 구분과 그 시기 동안에 각종 교육을 받게 하는 학교교육시스템이라는 국가제도를 탄생시켰다.¹⁰⁾ 다분히, 하나의 노동력 혹은 고단한 노동 현실에 묵묵히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는 자연스레 학생들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학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더욱더 통제중심의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집권한 독재정권은 교육이 아닌 훈육에 방점이 찍힌 일제강점기시대에 탄생한 교육제도를 바꾸기 보다는 그것을 유지, 발전시켜 사람들의 저항을 막고자 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사회, 혹은 부정한 권력행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 길러내기보다는, 체제와 권력에 순응하고 주어진 명령에 묵묵히 따르는 '국민'들을 양성했다. 각 학교마다 준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을 설치한 것을 보면 어쩌면 권위주의 정부세력이 원했던 것은 상급자의 명령에 군말 없이 묵묵히 따르는 병사들을 생산해내는 '학교의 병영화'이었을 것이다. 학교는 자연스레 억압적 규율체제가 되었다. 그 속에 당연히 학생의 인권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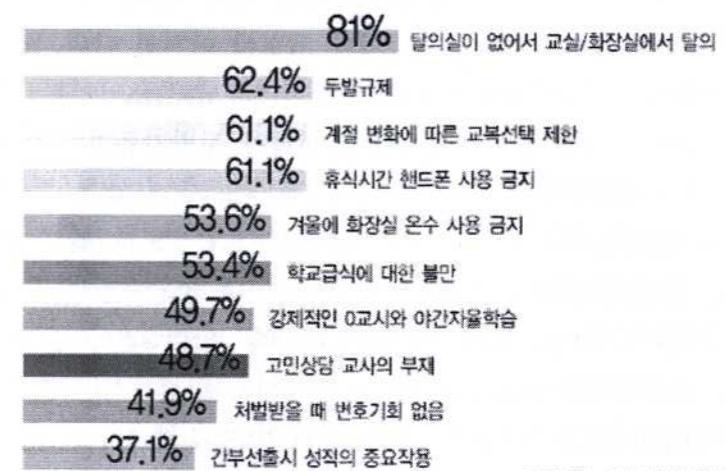
문제는 87년 이후 한국사회가 민주화가 되었어도 학교는 민주화의 흐름과 무관하게 여전히 억압적 규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는 살인적인 입시경쟁교육은 억압적 규율체제와 함께 어울려져 더욱더 학생인권의 현실을 후퇴시키고 있다. 입시경쟁교육체제 속에서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의 삶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보다 명문대학에 학생들을 몇 명을 합격시키느냐가 되어버린다. 학교는 그 목표를 위해 학생들을 더욱더 경쟁으로 몰아넣고, 경쟁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갖가지 통제조치들을 강요한다. 청소년들이 지금의 교육을 '미친교육'이라고 명명하듯이, 입시경쟁중심의 지금의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열악한 학생인권의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열악한 학생인권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 등에서 수행된 설문조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미 학생인권의 실태조사는 많이 이루어졌다. 먼저 살펴볼 2006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남녀 중고생 2910명을 상대로 벌인 <청소년인권의식 및 고충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10) 물론 학교라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교육의 제공기구의 등장은 노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성에 나왔던 것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서도 이루어졌다.

결과가 나왔다. 학생들은 탈의실 부재(81%), 두발규제(62.4%), 계절에 따른 교복선택제한(61.6%), 휴식시간 중 핸드폰 사용금지(61.6%),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53.4%), 강제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49.7%) 등에 대해 인권침해 경험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성적으로 인한 차별(29.6%), 인신공격성 폭언(20.1%), 손찌검 등을 당한 경험(25%)도 존재했다.

학생생활 영역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



자료출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 같은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에서 2006년 11월 발표한 <경북지역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도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635명의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했다. 소지품 검사 경험(44.6%), 두발불량이라는 이유로 체벌 경험(51.7%), 강제이발(23.2%), 복장불량으로 인한 체벌 경험(46.6%), 강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경험(56.1%)이 있었다고 얘기했으며, 75.8%의 학생이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에 대한 반대와 자유로운 학생생활을 위해 염색을 포함한 두발자유(85.7%), 보충자율학습 폐지(55.8%), 교복 자유(40.1%)를 필요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2007년, 전교조 서울지부와 학생생활연구회에서 수도권 중·고등학생 2059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학생생활 만족도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불만을 알아볼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정 중에 불만스러운 요인들로 두발제한(79.2%), 복장규정(65%), 학생회 논의 안건 제한(40.9%), 비합리적 상벌 규정(53.3%), 학생회 정치 활동 금지(28%), 학생회 활동 시 교사의 사전 지도(27.9%) 등의 규정을 뽑았다. 그리고 두발 제한(79.2%), 복장 규제(65%), 휴대폰 휴대 금지(86.5%), 소지품 검사(87.5%), 체벌(73.1%) 등 학생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위의 조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학생의 인권현실이 밝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갖가지 인권침해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규정에 대한 불만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이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각각 분류해 살펴보자.

■ 학생생활에 대한 통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 몇몇 가지 통제를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신체에 대한 통제¹¹⁾, 즉 두발규제와 체벌이 여전히 단위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두발규제의 경우, 학생들의 대규모 두발자유시위가 있었던 2005년 이후, 학교의 두발규정을 개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원칙적인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한 규정이 존속되고 말아 여전히 학생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두발규정이 계속 남아있고,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미는 강제 이발 행위 역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두발규제에 대해 학생들은 시위를 통해 폐지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2005년 이후, 해마다 평균 5건이 넘는(사회단체에 취합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등의 학교 내 시위가 발생하지만 문제는 학교 측이 이 여론을 받아 두발규정을 폐지·개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실제로 2007년, 서울 중앙고에서 일인시위를 포함해 두 차례의 두발시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실질적인 개정까지는 이루지 못하였다. 중앙고는 그래도 학생들의 여론을 묻는 절차라도 진행했지만 수많은 학교에서는 두발자유라는 신체의 자유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에 대해 징계·탄압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체벌 역시 계속되고 있다. 잊을 만 할 때면, 심심치 않게 초등학생 등을 포함해 학생들이 폭행당하는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큰 사회의 이슈가 된다. 그러나 2007년 대구 오성고 200대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는 체벌금지법제화 등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 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체벌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편, 최근 10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온산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기본적 지도를 위해 사랑의 매, 체벌을 허용하자는 체벌동의서를 보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사례는 입시경쟁교육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학부모가 체벌을 촉구하는 단위학교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작년부터 문제가 된 핸드폰소지금지의 경우, 울산 신정중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난 후, 이에 대한 인권침해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 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에 대해 기본권이라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지만 핸드폰 소지금지는 하나의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의 핸드폰을 원천적으로 학교 안에 가져오지

11) 신체에 대한 통제는 그저 한 사람의 몸을 통제한다는 것만이 아니다. 한 사람의 몸을 통제함으로서 힘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까지 지배·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무력화와 더불어, 억압과 통제에 대한 내면화까지 가져온다.

못하게 하고 있는데(가져올 경우, 핸드폰을 짚개는 1주일, 길개는 6개월 동안 압수시킴.) 이것은 한편으로 학교 안의 상황을 학생들이 사회에 고발하는, 예를 들어 위에 말했던 체벌행위의 영상을 찍는 하나의 수단을 금지시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핸드폰 소지금지의 규정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함께 추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전의 고지나 절차 없이 학생들의 가방을 뒤지거나 혹은 더 나아가 핸드폰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갖고 오는 것이다.

■ 고교선택제, 4.15학교 자율화 조치와 경쟁교육 강화, 그리고 휴식권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학교에 남아 학습을 시키는 강제야간자율·보충학습, 0교시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했던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이러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고교선택제와 4.15학교 자율화 조치 등에 의해서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고교선택제로 인해, 각 학교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명문학교 도약이라는 목표가 생겼고, 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의 허용을 각 단위학교에 위임한 4.15 학교자율화 조치 속에 학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0교시와 강제야간자율학습 등을 부활시켰다. 결국, 학생들의 삶을 옮아매는, 다시 말해 아침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강제적인 학습을 강요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에 계속 되는 영어몰입교육정책, 국제중 설립 등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의 강화는 공교육의 경쟁뿐 아니라 사교육을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을 발표될 때마다 사교육은 하늘로 솟구쳤고, 특히 그 수강의 양도 늘어났다. 그 고삐를 풀려고 했던 것이 올해 4월, 서울시 의회가 학원시간제한을 없애고, 학원 수강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유명학원을 중심으로 지하 강당에서 새벽 4시부터 수업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코피를 쏟아가며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있었다. 24시간 허용조치는 그저 명분을 위한 것이었고, 학생들의 삶, 그러니까 이미 자기 시간에 대한 선택권, 혹은 휴식 등의 건강권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 학생자치활동의 제한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교육 속에, 또한 입시경쟁교육의 강화는 중요한 학생의 권리중의 하나인 학생들이 학교에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혹은 학교 안에서 스스로 삶을 결정해 나가는 자치활동의 부재를 가져왔다. 특히 학생들의 자치활동 조직인 학생회는 각 학교마다 존재하지만 그 권한이 너무 미약하기에 존재 자체가 무색하다. 학생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설령 대의원대회

등 학생들이 결정한 사안, 혹은 회칙에 대해 재·개정안을 결정한 것에서도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회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도 모든 결정권한은 학생회가 아닌 학생회자문위원회, 학교 측에 있고, 또한 학교의 갖가지 사안에 있어 최종결정을 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참관은커녕 참석조차 불허되고 있다. 이런 학생회라는 자치조직의 기본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에서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치활동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²⁾

동아리 등 학생들의 자치문화활동 역시 마찬가지로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각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은 연습실이나 기본적인 장비, 예산 등의 지원조차 못 받고 있는 것이 상황이고, 또한 몇몇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강화되는 입시경쟁교육 속, 특히 2005년 내신등급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몰입할 수 없기 때문에 동아리에 가입·활동하는 학생들이 없거나 줄어들어 자진해서 해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탄압

자신들의 의견개진과 자치활동이 부정되는 현실과 또 입시경쟁교육이라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교육정책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 학생들은 거리에서 혹은 학교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의 정치적 권리에 따른 행동을 정부나 학교당국이 탄압하고 있다.

두발규제, 체벌, 핸드폰소지 보장 등 다양한 요구를 걸고 학생들이 학내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탄압으로 일관했다. 시위를 한 학생들을 폭력을 써가며 해산시키고, 곧이어 주동자를 찾아내기 위해 학생들을 모아 협박을 하며 하나하나 심문했다. 그리고 주동자를 찾아내면 퇴학위협과 더불어 다시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냈다. 물론, 그것을 거부하면 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수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인천의 예일고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12월 초에 두발자유를 요구하면서 학내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때려가면서 해산하고, 심문을 통해 주동자로 보인 학생을 수업시간에 불러내 진술서작성을 강요하고, 사회봉사 5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학교 밖, 학생들의 정치적 요구의 활동에도 탄압이 가해졌다. 올해 5월, 광우병위험과 경쟁교육에 대한 분노 속에 청소년들의 활동을 막은 것이었다. 전주 덕진경찰서의 형사

가 집회신고를 한 학생에게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교육부와 교육청이 상황실을 꾸리고,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 대규모 장학사와 교사를 파견해서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저도하겠다는 명목아래 학생들을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학교차원에서 학생들의 집회참여를 막기도 하였고, 교사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학생을 체벌한 경기 상고의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최근 일제고사와 관련된 학생들의 저항에도 큰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미 10월 달에 있었던 일제고사에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무단결석을, 그리고 당일 날 등교거부를 선언한 학생에게 다시 활동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를 관련해 해직된 교사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저항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출입통제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계속 있을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들의 거부와 반대 행동에 징계의 엄포를 놓고 있어 계속되는 인권침해가 이루어질 것 같다.

앞서 설명한 것 외에도 많은 인권침해 현실들이 있는데, 학생징계과정과 동성애에 대한 것을 간략히 살펴보자. 학생징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 예를 들면 외부활동, 정치적 활동 금지라는 조항의 존재, 그리고 학교 측에 있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자의적인 조항들이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자의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거나 혹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징계를 결정한다. 그리고 징계를 내리는 과정 속에 폭언과 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퇴학 등의 협박을 일삼아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물의를 끼치고 있다.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도, 동성애라는 것이 하나의 정당한 차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받아야 할, 징계 받아야 할 것으로 취급하면서 학생들을 격리시키거나 강제로 전학을 보낸다. 특히 학교 측의 차별적인 조치들은 동성애자 학생에게 자존감 보다는 더욱더 세상에 대해 위축받게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동성애자를 차별적인 존재로 취급해야한다는 인식을 심게 한다.

3. 개선 방안

이러한 학생인권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경쟁 해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책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 대책의 방향은 물론, 학생인권의 원칙에 기초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학생인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을 둘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확립이다. 그동안 교육기본법에서 학습

12)

자의 권리는 보장된다는 학생인권의 선언적인 조항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난 2006년 3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인권·청소년단체의 검토를 받아 발의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큰 지지를 받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① 학칙의 인권침해규정을 막고 학칙 중 학생생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해야 할 것(8조 2항 신설), ②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 하고 학생회칙 등의 제·개정권과, 학교생활과 급식비 등 학교의 납부금 징수 등에 의견 표명권을 부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17조 및 31조 2항 개정), ③ 징계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18조 2항 개정), ④ 학교의 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 즉 체벌을 금지 할 것(18조 3항 신설), ⑤ 학교장 및 학교 설립·경영자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 강구를 의무화 하며 학생의 동의 없는 0교시·야간 자율학습, 두발·복장 검사, 소지품 및 일기장 검사 등의 행위를 금지(18조 2 및 3 신설), ⑥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과 학생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체계구축 및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18조의 4)이다.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담고,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큰 지지를 받은 이 개정안은 2년간의 노력에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물론 '학교의 장과 이사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라는 학생인권의 보장의무조항이 통과되었지만, 이는 기존의 학생인권보장의 선언적인 조항을 재확인하는 것에 그친 것이었고, 또한 교육당국의 후속작업이 존재하지 않아 학생인권보장의 별다른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다시금 학생인권보장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차원에서 학생인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올해 학생의 날에 맞춰 학생인권법(학생회 법제화 부분은 다른 법을 통해 제출한다고 함.)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학생인권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통과도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기도 했었는데 학생들의 여론을 모아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자치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학생인권을 위한 사회주체들의 협약도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올해 아동·청소년인권을 주요과제로 삼은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각 교육, 정부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부처와 일부 교육단체들

이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 처리가 너무나 불투명한 상황인데, 학생의 인권보장이라는 원칙에서 협약체결이 추진되어 학생의 인권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협약, 법 개정과 지역 조례 안 등의 통과와 더불어, 학생의 인권침해현실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육당국에서는 학생인권침해현실에 대해 단위 학교자율성을 운운하며 회피하거나 혹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회신은커녕 오히려 학교 측에 민원을 한 학생들의 정보를 넘기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했다. 이제는 학생인권현실을 악화시키는 이런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조치가 아니라 인권침해현실에 적극적인 개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맘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책임 있는 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도를 포함하는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또한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에게 인권의 가치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인권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주체 중 교사 조직이나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 물론 입시경쟁교육이 강화되는 현실 속에 갖가지 제도에 의해 교사들의 자율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침해에 있어 구체적인 가해자가 되는 현실 속에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에 있어 교육철학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치열한 토론 진행, 학교현실의 문제를 학생과 함께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의 자치권보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의 기본적 원칙 위에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학생자신의 인권보장을 위한 책임의식과 권한강화를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앞서 확인했듯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회의 예·결산권, 회칙의 재·개정권, 학교운영위의 참여 등을 다양한 방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4. 결론

학생인권과 관련한 사건이 터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정도, 혹은 언급조차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해마다 다시 또 다른 학교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며 계속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학생들의 삶은 절망으로 빠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학생들은 자신이 놓여 있는 절망의 현실에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선택 중의 하나는 현실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교육정책이라든지 학교의 부

조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저항은 쉽지 않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탄압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항을 선택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선택은 현실에 대한 체념과 그리고 경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물론 저항과 체념 말고도 다양한 행위들이 있다. 경쟁 즉, 교육을 포기해버리는 일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학교를 그만두거나 혹은 학교수업을 거부하는 태업을 일으키며 소극적인 저항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학생들이 저항과 체념의 의미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다. 변화하지 않는 현실에 체념하는 의미로, 혹은 이 현실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인 자살은 특히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지난해(2007년) 1백42건으로 5년 전보다 42%나 증가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교생 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이 자살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월, 안타까운 목숨을 끊었던 어느 중학생의 유서는 지금 학교의 현실, 학생인권의 현실을 절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부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다 남이야기 같았어. 하지만 아니야
공부공부공부공부. 좀디쯤은교실에 선풍기4대 히터2대. 40명이 넘는 아이들.. 같은곳에서
각기 다른재능을지닌 아이들이 오직 한가지만 배우고 있었어. "대학가는법"
슬펐어.
.....내가죽는다고 변하는건 아무것도없을거야. 선생님들의 강력한 몽둥이도, 선생님들의
강력한 두발규제도,,선생님들의 공부공부소리..사회의 공부공부공부공부,,
.....난 사실 평범한 여중생일뿐이야.
노래부르길좋아하고, 그림그리길좋아하고, 수다떨길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놀기를 좋
아하는,
하지만 사회는 내게 그걸 바라지않아.
같은머리 같은옷 그리고 같은공부.
쫌디쯤은 교실에 아이들을 구겨넣고, 선풍기4대와, 히터2대. 그리고선생님..
(2007년 4월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유서)

학생이 목숨을 끊는 상황. 학생들의 인권이 유린하는 교육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의 교육, 그리고 죽음의 교육이라 말할 수 있다. 아니 이러한 교육은 교육이라 말할 수 없는 이 반교육의 행위일 뿐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반교육에 의해 목숨을 끊기 전에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미 해결책은 우리 곁에 있다. 학생, 그들의 인권,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통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교육으로 바꾸는 작업을 서둘러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토론1

학생인권 개선방안 모색

-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

임 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학교교육팀)

1. 학교와 인권

학교에서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경험 자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이 권고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4)에서도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권에 기반한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이다. 교육목표와 실천, 학교조직이 인권 가치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조차도 많은 학생들을 강당 등에 모여 놓고 조용한 분위기를 교사들의 지도하에 강요한 후 1~2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물론 인권교육 자체도 시도되지 않는 학교에 비해 한발자국 진전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면 이제는 '인권'이 하나의 교육이 아닌 학교안의 문화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는 TV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들 또한 학생이기 이전에 보편적 인간존재로서 가지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향유하기를 원한다.

2. 인권 친화적 학교의 개념과 기본전제

인권 친화적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구

성원의 일상 생활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를 말한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개인이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학교 내 권리 관계상 약자인 학생의 인권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친화적 학교는 학생인권이 상식화·보편화되는 학교를 말한다.

학생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립적 개념으로 '교권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과거, 경제적 논리에 의해 도로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많이 만들던 시기가 있었다. 육교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어린이, 노인들도 힘들게 했지만 튼튼한 다리를 가진 나에게도 불편한 대상이었다. 최근에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편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젠 도로에서도 경제보다는 사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 감과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한 시설은 나에게도 편하다는 것을 함께 느꼈다. 이처럼 학생 인권이 함부로 침해하는 학교에서는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 친화적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한 상호대립적 인식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과 함께 창의적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적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힘을 모으는 협력자이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합법적인 논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이 인권친화적 학교의 기본전제이다.

3. 인권 친화적 학교의 구현모습

학생인권이 상식화, 보편화 되는 학교란 무엇을 말하는가? 다음은 위 원회에서 2007년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 교육청, 교육·청소년·인권교육 단체, 인권교육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만들기 길라잡이(가칭)'의 학생인

권에 대한 내용이다.

○ 학교 1 :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을 바라보는 학교

- 학생이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보장받을 때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받는다) 고 볼 수 있다
- 또한, 학교당국은 학생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해치는 체벌, 모욕적 인 처우, 자유의사에 반한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학교 2 : 참여와 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

-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학생자치활동은 교육 주체로서 학생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모임을 만들고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며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기도 하다.
- 학생은 말이나 글, 몸, 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은 학교당국에 의해 수집된 자기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등 통제권을 가지며 자기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 3 :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자유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 학생은 연애, 교우관계 등 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권리와 그 관계를 둘러싼 감정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호감, 사랑, 우정, 질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은 성숙의 동반자이다.
- 학생은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생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강요될 수 없으며,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학교 4 :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어떤 학생도 어떤 이유로든 차

별받아서는 안 되며,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성, 장애, 인종, 출신지역, 성 정체성, 가족형태, 외모, 경제적 수준, 사회적 신분, 성적, 학년, 나이 등이 다를지라도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학교 5 : 학생이 감당할 만한 교육을 하는 학생 중심적 학교

- 학생은 적합한 환경에서 재능과 잠재력, 사람됨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차별 없이 누릴 권리 가지고 교육은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자연과의 공존 등 인류 모든 구성원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익힐 수 있도록 돋는 데 있다.
- 학교는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으며, 논쟁하고 반대하고, 시험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창조적이고 자발적이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어야 한다.
- 학생 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배움의 과정에 놓여 있는 학생이자 존엄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 학생은 쉼, 놀이, 문화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한다.

○ 학교 6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이 있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학습만을 다루는 공간을 넘어서서 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의 총체적 삶을 돌보는 학교이어야 한다.
- 학생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 체제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과 학생이 교실을 떠난 후에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학생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유념하고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 학생의 총체적 삶에 대한 돌봄은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었을 때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기관·단체 등에 대해 열린 태도를 취하면서 지역사회를 비롯한 학교 밖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 학교 7 : 권리 구제 장치가 마련된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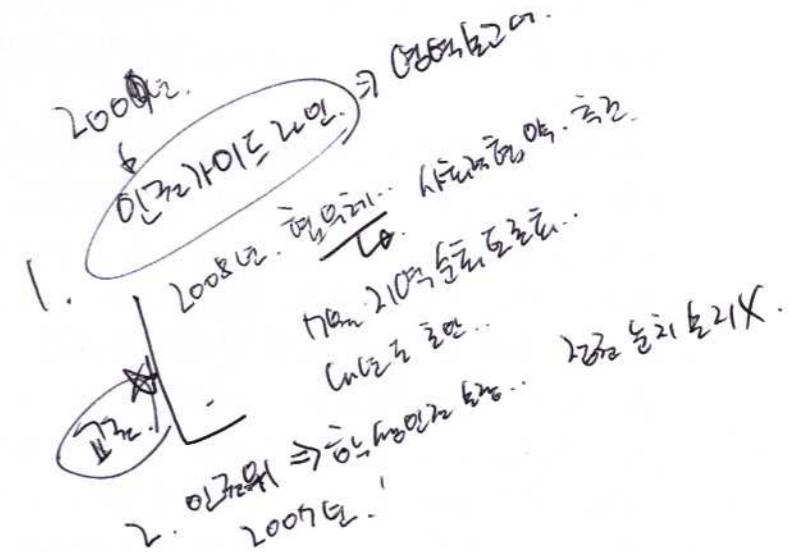
- 학교의 각종 징계규정은 인권의 기준과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은 사건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학생이 갖는 인권이 의미가 있으려면 권리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하기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
- 학교는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학교 안팎의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이용 방법을 교육하는 등 자유롭게 접근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교 8 :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존중하고 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학교

-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교사는 그러한 학교의 변화를 위한 옹호자이자 변화의 촉매자여야 한다.
- 모든 단계의 교육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아야 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교사의 직업적 환경과 가르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사는 학생의 다양한 이해 수준과 공부 스타일, 학생의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에 대해 이해하며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며 참여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8가지 모습으로 다 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학교현장에서 선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며, 이것을 학교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수많은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의 이 토론회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어울림이며 향후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1. 자존심이 센 교사들

- 교사들은 공부를 잘하는 일반 젊은이처럼 자존심이 강함.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별로 없음.
-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함.
- 자신들이 집중적으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원망함. 겉으로는 비판을 수긍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내 마음으로는 반발하기 쉬움
- 누구보다도 학생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함. 심지어 부모보다도 실은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함.
- 이런 생각은 교과부나 교육청의 장학사, 공무원들도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2. 학생 지도가 힘들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 순하고 착한 교사들은 학생 지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음
- 지각 지도, 결석 지도, 청소 지도, 숙제 지도, 학부모 상담 등등이 너무 어렵다고 경험하게 됨
- 차라리 대학원에서 좀 더 공부하여 다른 직종으로 가는 것이 편하다고 느낌
- 천직(天職)이라고 생각하여 있는데 천직(賤職)이고 일종의 3D 업종이라고 느끼게 됨

3. 교육 주체 간 협력 체계 형성의 중요성

- 많은 교사들이 청소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를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함
-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 체계 형성이 중요함.
- 개별적으로 하면 힘이 들고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함께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음

4. 학생 인권 무시 풍토와 교육 주체들의 책임

- 입시 경쟁, 성적 우선 풍토로 인해 학생 인권 보장이 후순위로 됨
- 출세 중심의 문화적 풍토가 문제이며 이러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그 풍토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측면이 있음
-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교가 단연코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을 받고 있음
- 인간의 심성은 미묘하여 인권 우선으로 대우한다고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함
- 대학 입시, 성적 중심, 지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을 다소 억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생 비행도 줄이고 대학 입시 성적도 좋게 하며 학부모의 선호도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흔히 생각하게 됨
- 최근의 법 제정 조항(특히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들은 학생 인권 보장에서 교육시민운동과 청소년 운동의 아주 중요한 성과물이며 전환점이 될 수 있음

5.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을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조항으로 만드는 사회 운동임
- 우선 찬성하는 단체나 정부 기관부터 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 방법이 적합함
-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협력자로 인식하는 태도가 중요함.
- 학교 단위에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모범을 만들고 확산하여야 함
- 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을 위한 지침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 진행하는 것도 적합하다고 보임
- 전교조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사회 협약 추진을 학생인권보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학교의 경우, 학교장, 학생회장, 학부모회장, 학교운영위원장, 지역 단체들이 참여하여 협약을 맺고 학교 구성원에게 공표하며 이 내용을 중요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2009년 5월 이전에 16개 시도별로 초중고 1개교 이상에서 사회협약 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드는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함
- 2008년 초에 제시한 사회 협약 시안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회 협약 시안

우리들은 2007년 12월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항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가. 학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폐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임을 확인한다.
- 나. 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재단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은 학교 운영의 목적이 학교 구성원 간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지덕체 교육을 실현하여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교육기본법 내용 반영)
- 다. 학교의 장을 비롯한 교직원은 학교에서 가장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며 자신들의 노력으로 학생의 인권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학생인권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활동한다.
- 라. 학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주요 주체임을 확인하며 학생 상호간의 노력 그리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구성원간의 노력을 통하여 학생인권보장에 노력한다.
- 마. 학부모는 학생의 인권 보장이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중시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존중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또한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
- 바. 사회 및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과 행복 보장이 사회 운영 목적이므로 학교 운영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사회 여론을 조성하며 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재단은 신설된 법 조항이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의미를 갖도록 학교 규칙 점검, 학교 운영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 아. 우리는 학생인권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재단, 사회 및 청소년단체가 상호 협력하여야 함을 확인하며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학생인권보장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2008년 5월 일

사회협약 참여 단체 :

- 중앙 차원, 지역차원(시도별)의 사회협약과 학교 차원(자발적인 희망을 바탕으로)의 사회 협약도 추진하기로 함

토론3

악생 인권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장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철 우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의망)

2008년 오늘은 21세기입니다.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어떤 시기보다 정보화 되고 대한민국 어디든 하루에 못가는 곳이 없습니다. 최첨단에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학생 인권은 아직 군사독재 시절 아니 일제시대 때 만주국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고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발을 당하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 받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멀시 받는 것이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 실태입니다.

그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한 노컷 운동은 두발규제에 부당함과 선생님들이 두발규제를 하며 얘기하는 논리에 허구성을 밝히며 그 본격적인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운동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강제 0교시, 야자보충 폐지운동은 잠 잘 권리, 밥 먹을 권리조차 없었던 학생들이 반대를 외치며 같은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주장했습니다.

그 뒤로 2005년도에는 내신등급제 폐지반대라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대규모적인 촛불문화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날은 청소년들이 교육주체로서의 자신들의 의견을 교육에 직접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을 위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인권운동은 끊임없이 성장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 학교 안에 상황을 넘어 미국소 반대운동에도 적극 나서며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21세기 들어와 일어나 청소년들의 운동입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주장해오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든지, 잘못했을 때는 맞아야 한다든지, 대학 갈 때까지만 참으라든지 하는 식에 논리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올바른 정보를 갖고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대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예전처럼 선생님과 학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사, 학교, 교육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대구에 한 여고에서 벌여진 체벌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에서는 한 초등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탈학교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인권문제에 그러면 직접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 정도에 사태가 오기까지에 가장 큰 책임자는 교사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교사나 학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는 교육당국에 관계자들입니다. 교육청, 교과부에서의 정책이 결국 지금의 청소년 인권문제를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 자율화라는 허울로 청소년 인권문제를 타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서 각 학교 별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보고 미온적 대책을 내는 교육당국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라 하며 각 학교 교장을 불러 놓고 이 교과서를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제 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문제는 유독 어쩔 수 없는 문제로만 여기는 것은 우리를 매우 황당하게 합니다. 진정 학생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 학교에서 인권문제가 우리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교육청은 책임을 면하고 당사자들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절대 근본적인 학생인권문제에 해결을 갖고 올 수 없습니다. 결국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운동은 아래로부터 시작하여 교육당국을 움직여야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각 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인권보장에는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두발이나 체벌, 차별 문제가 있고 학교 시설이나 학교폭력,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되었던 벌점제로 인한 강제전학과 퇴학 등이 그 범주에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 요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가령 두발자유 조차 되지 않는 학교에서 그 보다 더 한 인권의 보장은 그 아무리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발단속에 명분이 없고 학생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교육청에서 자율적 규칙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제에 대해 제기 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운동 방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다수 학생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안 한 가지라도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인권 보장 운동은 철저히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수의 활동가나 어른단체들이 핵심이기 보다 당사자인 다수 학생들이 스스로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 과정이 학생인권 전반을 높일 수 있는 힘을 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학생인권은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반드시 이뤄낸다면 다른 문제들은 도미나 현상을 일으키며 학생들 스스로 찾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부터가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기성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학생 스스로가 이 운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학생인권운동을 생각하면 예전 여성의 참정권운동이 생각납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도 전 세계적으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1세기 전만 해도 그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금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듯 청소년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에는 지금의 청소년인권탄압이 우스꽝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날은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성 참정권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피와 땀을 흘렸듯 우리 청소년 인권 역시 많은 활동가와 청소년들이 열심히 노력 했을 때만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고 그 시기 역시 빠르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09년은 학생인권운동에 매우 좋은 조건의 해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학생인권에 적극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 과정을 겪으며 청소년들이 활동가들이 많아지고 청소년들의 의식도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의 인권은 입시경쟁이 치열해 지며 더욱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학생인권보장의 원년에 해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학생인권의 현 주소. 어쩌면 관용어만큼이나 자주 사용되는 이 문장이 지금부터 이야기 할 주제이다.

일단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부터 전통적으로 학교에서 폭력을 장려하고 있고, 그 전부터도 회초리 등의 체벌은 있어왔다. 사회적으로는 친일파가 (조금) 청산되고, 반독재 시민운동이 확산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대표적으로 도덕교육의 경우 대의적으로 반공교육이 통일 안보교육으로, 다시 통일 안보교육에서 국가 민족생활로 바뀐 정도밖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학생, 교사들의 의식이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12년만 참으면 탈출할 수 있는 공교육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가장 잘 적응한 학생들이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가 된다는 어떠한 법칙에 의한 것일 테다.

앞서 말한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체벌 등의 문제 또한 폭력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가 가지는 폭력성과, 입시위주 교육, 두발 규제 등도 심각한 폭력문제이다. 그리고 이런 폭력문제는 폭력문제 자체에 학생들의 신경을 집중시켜 가장 근본적인 물음, “왜 우리가 공부해야하는가”라는 물음을 방해한다. 그런 물음이 없는 학생들은 단지 목표하는 대학, 회사, 직업을 위해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있을 뿐이고 자신의 삶을 더욱 더 양질의 것으로 바꾸기 위한 공부는 결코 아니다.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공모전에 낸 “퀴리와 함께한 일요일”의 주인공 고은이는 공부를 잘하지만 삶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를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 아이이다. 고은이는 사회의 엘리트가 되겠지만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에 대한 진정성이라던가, 간절함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분명 고은이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즐기는 자가 노력하는 자를 이긴다는 말이 있다. 즐기며 공부해 온 다른 나라의 아이들의 수준에, 포화에 이른 우리의 수준은 결국에는 추월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촛불 세대(웹 3.0 등)로 불리는 지금의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이다. 그들이 불붙인 촛불은 지금 너무나도 미약한 빛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은 고3이 가까워오는 현실에 “자신을 재정비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을 갖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세대의 다른 특성은 빠른 유행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 촛불집회는 한 번 정도 나가봤던 지난 유행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과거의 짧은 세대에게도 유행은 빨랐겠지만 정보의 습득과 이용이 용이해진 이 세대는 과거 세대보다 빠른 변화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변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풀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교육의 최종 목적에 대한 합의와 수정이 필요 할 것이다. 지금의 “대학에 보내기 위한 교육”은 학생들과의 합의가 없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생겨난 부표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학별위주의 사회도 변화가 필요 할 것이고, 대학 진학률을 낮춰서 학생들을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인수하도록 해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교사들이 과거에 비해 학생을 인격이 있는 존재로 대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라는 생각, 혹은 학생 인권이 신장되면 교권이 침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도 그런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는 교사들은 더욱 많다.

또한 처음에는 열정과 투지로 불타던 교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또 너무 많은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인권의식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인권의식을 길러야 하는 것은 학생, 학부모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힘이 약하다고 느끼는 것에 반해 아직도 교사의 영향력은 매우 거대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약자일 따름이다. 학부모들은 대다수가 아직도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일임하고 싶어 하고, 교사들은 학생에 대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교사들이 높은 인권의식을 갖게 된 이후에야, 학생들 역시 높은 인권의식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변화들을 바탕으로 학교마다의 기존의 두발 규제와 억압과 강제로 점칠 되었던 교칙이 변화되고, 교육과정도(지금도 변화하고 있지만) 점차로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학교(학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2002. 5. 23. 02진차22 [나이를 이유로 한 대학신입생모집 과정의 차별]

대학의 입학시험에서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연소자 우선원칙을 채택하여 연장자를 불합격처리한 것은 입학시험 지원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집인원 유동제 등에 의한 합격처리 등의 구제조치를 이행하고 대학신입생 모집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 정책, 관행 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시정·개선할 것을 권고

2002. 9. 9.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의견]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할 것을 권고

2002. 10. 28.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교육부의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개정 내용 중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 협의할 것을 권고

2003. 5. 12.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

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원 인사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

□ 2003.5.21. 03진인26 결정[학교내 장애인이동시설 미설치]

학교내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권고 및 '장애인등'에게 편의시설이 완비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권고

□ 2003.9.15. 03진차127 결정[사회적신분(비학생청소년)에 의한 차별]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의 할인에서 학생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구별하는 것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정 또는 개선을 권고

□ 2003. 9. 25.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에 대한 구제권고]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위헌결정 당시 이미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들에 대하여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

□ 2004. 2. 16. 03진차27 [기타사유에 의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대학입학전형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장애종류 가운데 특정장애 종류에 대하여서만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것이 다른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를 특별전형함에 있어서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관행의 시정을 권고

□ 2004. 5. 24.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교원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해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간강사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2004. 10. 1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2005.3.14. 04진인3256 [○○중학교의 학교폭력관련 인권침해]

피해학생의 담임, 교감, 교장은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해학생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 등을 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2005. 3. 25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한 의견 표명]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에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의견 표명

□ 2005. 6. 27. 05진차204외 2건 [두발제한관련 인권침해]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이므로 해당 고등학교장은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고, 중학교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육목적상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중학교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

□ 2005. 8. 31. 05진인1055, [학교급식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각급 학교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이의 방지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유사사례의 방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 조치할 것을 권고

□ 2005. 9. 28. 05진차517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부여하고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초등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2005. 9. 28. 05진차250 [부당한 퇴학처분관련 인권침해]

고등학교 학생이 두발자유화를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전단을 작성 · 배포하였다고 하여 학칙위반으로 퇴학 처분하면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해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을 재심의 하고, 학생징계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토록 학생선도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 2005. 12. 26. 04진차84,286,287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종전 훈령 내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한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초중고 여학생 대상, 2006. 3.부터 시행)

□ 2006. 5. 29. 06진차37 [성별을 이유로 한 신입생 모집 차별]

신입생 모집시 성별에 따라 모집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 하지 말 것을 목포해양대학에 권고

⇒ 여학생 입학생 비율을 매년 1%씩 증가시키기로 함(현재 10%모집)

□ 2006. 6. 28. 06진인1030 [부당 퇴학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향후 학생 징계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해당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허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2006. 8. 29. 04진차 386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등]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화교들의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화교학교 출신학생이 한국학교로의 전 · 입학이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시 학력을 인정받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 2006. 10. 9. 05진차100 등 5건, [대학교의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 차별]

가. 대학교 수시모집시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원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규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검정고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임

나. 특히, 최근 수시모집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전체 대학선발과정의 50%에 해당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검정고시출신자로 하여금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학입학과정에서의 실질적 응시 기회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다. 따라서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응시기회가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권고

⇒ 2008년도부터 개선조치 적용

□ 2006. 11. 28, 06진차449, [성적을 이유로 한 학급회장 자격 제한]
학업성적(80점 이상인 자)으로 학급회장 자격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권고

□ 2006. 12. 11, 06진차411, [장애를 이유로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공립특수학교인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집근처가 아닌 집에서 7~3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하차시키는 것은, 비장애인들과 달리 장애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해당 거리를 무사히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장애학생에게 비장애인들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환경의 조건을 제공하는, 적절한 편의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도교육감에게, ○○학교에 등학교하는 장애학생들의 교육학습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통학버스 운송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

□ 2006. 12. 22, 05진차1041, [대학입학 특별전형 응시자격 차별]
대학교 입학시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에 있어 응시자격을 출입년도 기준으로 제한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권고.

□ 2006. 12. 22, 06진차409, [방통대의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차별]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은 비장애인의 학습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바, 방송통신대학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출석수업에서 강의 내용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

들에게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교 총장에게,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에서 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2007. 1. 15, 06진인3067,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퇴학처분을 학생선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등학교는 2006. 9. 21. 학생선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에게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퇴학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결재상신한 바, 이는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임. 따라서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할 것과 향후 학생 퇴학처분시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

□ 2007. 1. 15. 06진인943, [학생간 폭행 방치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6학년 학교생활 동안 수시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특히 가해학생들이 경찰에 고소되어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 입원 및 4주 진단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학교측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학교폭력 예방업무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임

□ 2007. 1. 31, 06진인2030, [집회의 자유 침해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학생 두발규제 등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과 근거가 없이 휴대폰을 수거, 열람하고 소지를 금지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국제인권협약 『아동의 권리』 제12조를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학교생활규정의 “휴대폰 소지금지”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을 권고

□ 2007. 2. 12, 05진차29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정치활동 제한]

국공립대학교 총장에게 대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생 정치활동 제한 규정을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

□ 2007. 3. 28, 06진차418,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피진정인 ○○과학기술고등학교장 및 ○○○미디어고등학교장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시교육감에게 통합교육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2007. 4. 16, 06진인836,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 교사가 수학여행 기간 중 지시사항(24시 이후 이동금지 등) 위반 학생들(5명)에 대해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20여회 실시하고, 동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뺨을 구타하고, 학생부장선생이 만류하자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또 다시 뺨을 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체벌을 하고 이후 동 사건 관련 회의 중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욕설 등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31. 2007. 9. 7, 07진인898, [야구선수 이적동의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야구선수 이적 동의 불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7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체육특기생의 진학 및 전·출입 제도 개선사항’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고, ○○도교육청의 2006년 ‘학교체육 선수 관리지침’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선수 타·시도 전출 억제’ 대상

선수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등학교장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야구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 2007. 10. 9. 07진차221,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 이용 차별]

○○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의 2007학년도 신입생 선발에 있어 병역미필자는 1987. 1. 1.(만 20세) 이후 출생자, 병역필자 및 병역면제자는 1983. 1. 1.(만 24세) 이후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신입생 모집이 나이에 의해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

□ 2007. 12. 14, 06진차475, [나이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서울시내 소재 국·공립 도서관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열람실 및 자료실 입장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개방할 것을 권고

□ 2008. 5. 19, 07진차1031, [인재숙 운영으로 인한 교육기회에서의 평등권 침해]

○○군수에게 공교육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립학원 선발방식, 운영주체, 학사운영 등을 개선하되, 이미 ○○군청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2007년에 실시한 연구용역인 “○○군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고려하여 공립학원 운영 전반에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 2008. 1. 28, 08진차13,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입실 자격을 성적우수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이므로 정독실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독실 입실기준을 수립하고 그밖에 다양한 정독실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등권 침해]

□ 2008. 4. 3, 07진인2330,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는 피해자 등 20여명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벌점으로 퇴학예정 조치와 전학권고를 받아 10여명이 자퇴하고, 관내 학교 전학 불허로 인해 피해자가 2007. 10. 말경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가는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것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의적인 조치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한 학생의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도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도교육감 및 ○○고등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008. 5. 2, 08진차116,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

국가인권위는 S고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S고등학교 교장에게 조속한 특수학급 설치할 것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008. 5. 8, 07진인190, [부당한 강제퇴교, 형식 등에서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급 사관학교에서 자퇴 희망자에 대하여 퇴학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 제도에 대하여 그 진정성 등을 확인하여 자퇴를 인정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3금제도'에 대하여 △금주·금연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학·휴가기간 등 교육 및 훈련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금혼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3금제도」를 교육적으로 직접 필요한 경우만으로 완화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 2008. 5. 19, 07진차459, [성적우수자반 운영으로 인한 학생 인권 및 평

국가인권위는 해당 10개 학교장들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신의 학습 성취도와 그 적성 등에 맞춘 교육 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또한, 해당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성적우수자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내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학업성취도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 권고

□ 2008. 12. 22[부당한 전학권고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전학 강요는 인권침해라는 결정.

강원도교육감에게 축구선수들에게 부당하게 전학을 강요한 K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및 학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고



메모

1. 사회적 협약.
→ 중간자 역할 X, 그 누구인 인증 방식은 주제로.
2. 인증서 ⇒ 접근성이 높아야 함.
학생들의 인증서 사용
2007년 '경기도 첨성고'.

3. 교육 기관은 사적으로 보내어야 함. 교통편의 문제로 실수 많아.

→ 학교에 등록. ⇒ 친환경. 2007년.
학교를 보내는.

인증판례의
현대수준 기준 고려해보니...

→ 학생의 날 축하 인증서는 가능 X.

인증교육.

교육부가 허락해?

네...

아니라고 한다.

교육부가 본래 학습 내용 전달
한정된다.

4. 장년기 단체 ⇒ 노인·간호·시중... 한 번도 없으나...

학생들은 노인단체들을 21세으로 표기하는 경우...

21세를 표기하는 경우...

학년과 기관을 표기하는 경우.

21세를 표기하는 경우.

학부모. ⇒ 인증한 양이나 어떤.. 물건은 인증해도.
가능한 학부모...

가능한 학부모...

① 학부모. → 학부모는 제작 특별히...
제작 특별히...
제작 특별히...
제작 특별히...

교육정책
부문 4.

참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발행처 :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 소 : (120-050) 서울시 냉천동 209번지 2동5번 2층
전 화 : 02-393-8900 / 전송 : 02-393-9110
학부모상담실 ☎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이메일 hakbumochol.com
발행일 : 2008년 12월 29일